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64
----------	-------

발의연월일 : 2019. 6. 20.

발의자 : 김학용 · 임이자 · 주호영  
김무성 · 신보라 · 김동철  
한정애 · 성일종 · 추경호  
김성원 · 이상돈 · 홍문표  
문진국 · 송희경 · 전희경  
박인숙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이고(제5조의2제2항),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제5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사업주 자체 교육일 경우에는 내부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기준이 없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기초 지식이나 장애인 고용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교육이 가능하여 형식적인 교육 운영이나 왜곡 등 교육 품질 저하의 우려가 높음.

따라서,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집합 교육 형태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사내강사 지정과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3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5조의3에 따른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 ② (생략)  <u>&lt;신 설&gt;</u></p> <p>③ ~ ⑤ (생략)</p>	<p>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5조의3에 따른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다만,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u>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u></p>